

급여 이용정보

I. 운영규정 개요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 ① 입소정원은 38인으로 한다.
- ②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유선상담, 지면광고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 ① 계약기간-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기간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 ② 계약목적-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인정등급(1~5등급 시설급여)을 받은 분들에게 일상생활, 의료, 재활, 여가, 치매예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시설급여서비스 범위)하여 노인 및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 라. 비급여 항목이 변경되었을 경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사항)
- ④ 월 이용료,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다음의 표와 같이 한다.

월 입소 비용							
구분		1등급		2등급		3,4등급	
		일반	감경	일반	감경	일반	감경
30일	본인부담금	391,140	195,570	362,940	181,470	334,680	167,340
	식재료비	225,000	225,000	225,000	225,000	225,000	225,000
	간식비	0	0	0	0	0	0
	합 계	616,140	420,570	587,940	406,470	559,680	392,340
31일	본인부담금	404,180	202,090	375,040	187,520	345,840	172,920
	식재료비	232,500	232,500	232,500	232,500	232,500	232,500
	간식비	0	0	0	0	0	0
	합 계	636,680	434,590	607,540	420,020	578,340	405,420

⑤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 등 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노인장기요양소망요양원

급여 이용정보

2) 세부기준

- (1) 식사재료비 : 1일 3식 기준 7,500원.
- (2) 상급침실 이용료 : 0원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 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한 지침을 준수하며,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⑥ 표준장기이용 계획서 및 욕구평가를 통한 급여제공계획서에 근거하여 합당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⑦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한 서비스 외에 수급자가 임의로 원하는 서비스의 경우 이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실비로 수령한다.

3. 필요시 의료이용 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 가.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 나.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다.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 라.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 협약 의료기관 또는 축탁의 진료에 관한 사항

- 가.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축탁의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단 협약의료기관의 사정에 따라 협의하여 진료조절이 가능하다.
- 나.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 다. 협약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축탁의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축탁의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 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소망요양원

급여 이용정보

③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가.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나.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1.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2.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3.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다.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1.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2.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라.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1.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등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2.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전의사결정동의서에 작성한 것을 토대로 가족이나 보호자 없이 시설직원이 동행 할 수 있다.
3.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 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④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가.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나.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4.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 ① 입소어르신은 본원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어르신에 의한 본원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 ② 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장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5.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은 입소 어르신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가.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농원정기관 소망요양원

급여 이용정보

- 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는 시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가.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 나.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다.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라.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II 종사자 근무체계

1. 직종별 인력배치기준 및 배치인력

계	원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사무원	위생원	관리원	조리사	축탁의사
배치기준	1	필요수	1	1	1	14	필요수	필요수	1	필요수	1	1
26	1	1	2	1	1	15	0	1	1	0	2	1

2. 종사자 근무체계

직종	구분	근무시간	인원	비고
시설장	주간근무1	08:00~17:30	1명	
사무국장	주간근무7	09:30~18:00	1명	
사회복지사	주간근무5	08:30~17:30	1명	
	주간근무3	08:00~19:00	1명	
작업치료사	주간근무5	08:30~17:30	1명	
간호(조무)사	주간근무5	08:30~17:30	1명	
요양보호사	주간근무1	08:00~17:30	5명	
	주간근무2	08:30~18:00	0명	
	주간근무3	08:00~19:00	6명	
	주간근무4	06:00~18:00	0명	
	주간근무5	08:30~17:30	0명	
	야간근무1	19:00~08:00	2명	
	야간근무2	20:00~06:30	2명	
사무원	주간근무3	08:00~19:00	1명	
영양사	주간근무1	08:00~17:30	0명	
조리원	주간근무4	06:00~18:00	2명	
위생원	주간근무1	08:00~17:30	1명	
관리원	주간근무1	08:00~17:30	0명	



노원정기소망요양원

급여 이용정보

주간종사자				야간종사자			
연번	직	종	성명	연번	직	종	성명
1	시	설	장유성호	1	요양보호사		김연목
2	사	무	국장유동현	2	요양보호사		이순녀
3	사	회	복지사유수현	3	요양보호사		이기영
4	사	회	복지사김안라	4	요양보호사		박금철
5	간	호(조무)사	김정현				
6	작	업	치료사손혜림				
7	요	양	보호사강혜복				
8	요	양	보호사하정선				
9	요	양	보호사배미용				
10	요	양	보호사강금자				
11	요	양	보호사김옥분				
12	요	양	보호사김장순				
13	요	양	보호사반우학				
14	요	양	보호사양영순				
15	요	양	보호사정영자				
16	요	양	보호사최다연				
17	요	양	보호사서경희				
18	조	리	원송순자				
19	조	리	원김향란				
20	사	무	원박주환				
21	위	생	원서준희				
22	촉	탁	의원원종원				

평일종사자				휴일종사자			
연번	직	종	성명	연번	직	종	성명
1	시	설	장유성호	1	사	회	복지사유수현
2	사	무	국장유동현	2	요	양	보호사강혜복
3	사	회	복지사김안라	3	요	양	보호사김연목
4	간	호(조무)사	김정현	4	요	양	보호사이기영
5	작	업	치료사손혜림	5	요	양	보호사하정선
6	요	양	보호사김옥분	6	요	양	보호사배미용
7	요	양	보호사박금철	7	요	양	보호사강금자
8	요	양	보호사이순녀	8	요	양	보호사양영순
9	요	양	보호사반우학	9	요	양	보호사정영자
10	요	양	보호사김장순	10	조	리	원김향란
11	요	양	보호사최다연	11	조	리	원송순자
12	요	양	보호사서경희				
13	사	무	원박주환				
14	위	생	원서준희				
15	촉	탁	의원원종원				



노원창기관소망요양원

3. 종사자 현황

번호	직종	성명	자격증	입사일	비고
1	시설장	유성호	사회복지사 2급	2003.05.15	
2	사무국장	유동현	사회복지사 2급	2008.06.18	
3	사회복지사	김안라	사회복지사 2급	2017.05.08	
4	사회복지사	유수현	사회복지사 2급	2010.06.25	
5	간호사	김정현	간호조무자격증	2017.04.19	
6	작업치료사	손혜림	작업치료면허	2017.04.28	
7	요양보호사	강혜복	요양보호사 1급	2003.05.15	
8	요양보호사	강금자	요양보호사 1급	2017.03.28	
9	요양보호사	김연목	요양보호사 1급	2013.12.02	
10	요양보호사	김옥분	요양보호사 1급	2013.04.01	
11	요양보호사	김장순	요양보호사 1급	2018.03.21	
12	요양보호사	박금철	요양보호사 1급	2017.11.03	
13	요양보호사	반우학	요양보호사 1급	2018.03.01	
14	요양보호사	배미용	요양보호사 1급	2012.12.26	
15	요양보호사	양영순	요양보호사 1급	2017.08.26	
16	요양보호사	이기영	요양보호사 1급	2016.07.26	
17	요양보호사	이순녀	요양보호사 1급	2015.08.24	
18	요양보호사	정영자	요양보호사 1급	2017.11.01	
19	요양보호사	최다연	요양보호사 1급	2017.08.14	
20	요양보호사	하정선	요양보호사 1급	2012.12.03	
21	요양보호사	서경희	요양보호사 1급	2018.04.02	
22	조리원	김향란	-	2017.02.13	
23	조리원	송순자	-	2017.07.02	
24	사무원	박주환	-	2017.07.10.	
25	위생원	서준희	-	2017.01.02	
26	축탁의	원종원	의사면허	2017.06.01	



Ⅲ 시설현황

시 설 명	소망요양원					장기요양급여종류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시 설 장	유 성 호					자 격 증				2급 사회복지사			
대지위치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장능리					지번				253-4			
대지면적	2,990㎡					건 축 물 수				1			
건축면적	898.78㎡					주 용 도				노유자시설			
건폐율	30.06%					총 주차대수				5			
구분 시설별	침실	사무실	요양 보호사실	자원 봉사자실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 (작업) 치료실	프로 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재해 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41개소	14	1	1	1	1	1	1	1	9	9	1	
정원	현원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특별실		
38명	35명		-		7		2		4		1		
시설설비	침실,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자실,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조리실, 비상재해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실, 건조장, 기계실, 보일러실, 린넨실, 창고, 저온저장고,야외휴게실, 테라스, 파고라, 주차장, 산책로, 특별실												
보험가입	영업배상책임보험, 전문인배상보험, 화재보험												
주 소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진상미로 582번길 80-90												
전 화	031-641-9505					FAX			031-641-9507				
홈페이지	www.somanghouse.com					E-mail			somangysh@naver.com				

